

각국의 안전관계 법령집

- 중국 -

박 장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정보서비스 팀장)

1. 중국의 법체계

가. 중국법의 특징

(1) 중국법의 특징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대외개방 개혁노선을 추진하여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법령(예를 들면, 주식제 기업시행변법, 특허법, 저작권법)도 제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대륙법권이나 영미법권과도 다른 사회주의법권에 속한다.

(2) 법령의 명칭과 레벨

중국의 법령에는 「법」, 「조례」, 「규정」, 「통지」, 「변법」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제정기관과 안전 방재관련의 주요한 법령 명은 아래와 같다.

(가) 법

전국인민대표대회(통칭 전인대 : 국회에 해당)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노동법, 공회법(노동조합법에 해당), 광산안전법 등이 있다.

(나) 조례, 규칙, 규정, 변법

정부기관의 각 부문에서 작성한 법령 규칙을 국무원(행정부에 해당)이 채택한 것은 통상 「조례」, 「규칙」, 「규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다만, 모든 「조례」, 「규칙」, 「규정」이 국무원 레벨에서 채택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중에는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보통 년 1회 소집하는 전인대에 대하여 상무위원회는 상설 입법기관)의 비준을 받는 것도 있다. 「소방조례」는 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조례」, 「규칙」, 「규정」이라는 명칭의 법령은 법보다도 한단계 하위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조례」, 「규칙」, 「규정」중에는 제정 후 전인대의 비준을 거쳐 법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규정」, 「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다) 규정, 표준

정부부문의 위탁에 의해 연구소나 대학의 전문가가 작성한 기준을 국가기술감독국의 승인을 득해 국가기준으로 공포한 것으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검사에 관한 검사규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방법의 기준은 「규정」, 제품, 장치의 성능기준은 「표준」이라는 경우가 많다.

나. 중국의 통치기구

중국의 헌법(1982년 채택)에서는 중국을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국가」(제1조)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를 채용(제3조)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국가행정기관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은 전국 레벨 및 각 자치체 레벨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전부 인민대표대회(의회에 해당: 전국 레벨의 전인대회,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여러 Class의 인민대표대회가 있다)에 의해서 조직되고, 감독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체로서는 성(대만을 포함한 29성),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가 있다. 그 아래에 현, 시, 시 직할구, 향, 민족향 및 진이 있어 각각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가 설치되어 있는 외에 소수민족의 자치조직으로서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있다.

다. 중국진출에 관한 인·허가사항

중국의 행정기관은 각각 아래의 범위에서 인·허가권한을 갖고 있다.

(1) 3,000만\$ US 미만까지의 인·허가권한을 갖는 기관

• 요녕성, 산둥성, 광둥성 등의 주요 성, 북경, 천진, 상해, 대련 등의 일부 대도시, 5 경제특구(심천, 珠海, 海南島, 廈門, 스와頭), 상해포동신구

(2) 1,000\$ US 미만까지의 인·허가권한을 갖는 기관

• (1) 이외의 모든 성, 민족자치구, 일부 대도시(하르빈, 청도, 광주, 중경, 성도, 남경 등), 국무원의 각 부, 위원회, 국c. 500\$ US 미만까지의 인·허가권한을 갖는 기관

• 상기 이외의 모든 시 및 (1)의 시의 관할 하에 있는 구, 현 상기 이외의 모든 중앙 정부의 인가대상이 된다.

2. 중국의 방화·방폭규제의 개요

가. 규제이틀

방화·방폭에 관련한 주된 법령 규칙은 아래와 같다.

○중국 소방조례(1984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준, 국무원 시행)

신축, 확장 및 개축공사의 설계 시공은 국무원 관계주무관청(주: 국무원 공안부)의 건축설계의 방화규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가연물이나 폭발물의 제조, 저장, 운반시설 등도 국무원 관계주무관청의 가연성 또는 폭발성 화학물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타 소화기구, 방화 소화활동, 피난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소방조례실시세칙(1987년 국무원 비준 공안부 시행)

앞서의 소방조례의 내용을 약간 구체화한 규정이 쓰여져 있고, 화재예방, 자위소방조직, 소화활동, 소방감독기관 등에 대한 규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본 실시세칙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법(1989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채택, 국가주석 공포)

「도시계획구」내에서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에 합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전체 계획 및 상세계획으로 되고, 각 도시의 인민정부가 작성하여 상급기관(도시의 위치, 규모에서 다르다)의 심사 허가를 받는다.

○토지관리법(1986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채택, 국가주석 공포)

도시부의 토지는 국가소유, 농촌부의 토지는 공동소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을 것, 국유지의 유상사용이 가능한 뜻을 정하고 있다.

○토지관리실시조례(1991년 국무원 공포/시행)

토지관리법에 따라 국가건설용지(국가의 프로젝트 용지)의 수용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상해시의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변법(1987년 상해시 인민정부 공포/시행)

상해시에서 토지사용권의 유상불하(입찰 또는 합의에 의함) 및 양도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변법에 있어서 사용권의 잔존기간은 주택, 호

텔, 상업시설 등은 50년, 공업용지는 40년, 오락용지는 20년이 최장으로 되어 있다.

○대련경제기술개발구의 토지관리변법(1987년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채택)

대련기술개발구의 토지사용료 등에 대해서 규정. 또한, 외국인 투자가의 수출형 기업 및 선진기술기업에는 5년간의 토지사용료 면제의 우대조치가 인정되어져 있다.

○표준화법(1988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채택/공포)

사회주의 상품경제발전을 위해 아래의 것에 대해 규격을 제정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 공업제품의 품종, 규격, 품질, 등급, 안전, 위생
- 공업제품의 설계, 생산, 검사, 포장, 저장, 운송, 사용방법 또는 생산, 저장,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요구
- 환경보호에 관한 각종 기술요구 및 검사방법
-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방법 및 안전에 관한 요구
- 공업생산, 공사건설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용어, 부호, 약호 및 제도방법
- 중요 농산물 그 외 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무원이 정한 것.

지방표준 중, 공업제품의 안전 위생에 관한 것도 「강제적 표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방화 방폭, 노동안전에 관한 규격은 모두 강제규격이다.

○표준화법 실시조례(1990년 조례)

표준화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적 규격의 제정방법, 담당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규격채용관리변법(1982년 공포)

ISO, IEC 기타 권위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에 정해진 규격 등 중국 국가규격으로 채용과 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규정.

나. 중국의 방화관련 제 표준

중국의 방화관련 법령 규칙 중, 실무상 중요한 것은 모두 법률이 아닌 규격의 형으로 제정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표준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기관이 전부 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KS 등의 규격보다 법, 령, 시행규칙 등의 행정법규에 가까운 것으로서 받아들여는 것이 실태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방화관련의 주요 국가표준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건축설계방화규범

중국 국가표준. 공안부 작성,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88년 5월 1일 시행

(2) 고층민용건축물 설계방화규범

중국 국가표준. 공안부 작성, 국가경제위원회, 공안부 비준, 1983년 6월 1일 시행

(3) 기타 제 표준

○인민방공공정 설계방화규범

중국 국가표준. 인민해방군 참모부, 공안부 작성,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87년 10월 1일 시행

○기차고(차고) 설계방화규범

중국 국가표준. 공안부 작성,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85년 1월 1일 시행 소방차량, 방공용 차고 등을 제외한 차고에 대하여 규정

○村鑛건축설계방화규범

중국 국가표준. 공안부 작성,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91년 3월 1일 시행. 촌진(농촌부)에 있어서 공업용, 민용 건축물의 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하 및 복토화약작약창고 설계안전규범

중국 국가표준. 병기공업총공사, 중국 물자부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2년 10월 1일 시행. 화약 등의 창고에 관하여 다른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규정

○석유화공기업 설계방화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 석유화공총공사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2년 12월 1일 시행

○석유고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석유화공총공사, 중국 석유공업부 작성,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85년 6월 1일 시행 석유저장설비(용량 500m³ 미만의 것,

지하수봉식인 것, 천연 동굴식인 것, 사용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에 관하여 이격거리, 소방설비, 전기 계통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 소형 석유고 및 기차(자동차) 加油站(급유소)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석유화공총공사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2년 12월 1일 시행 소규모 석유저장고 및 급유소에 관하여 이격거리, 소방설비, 전기 계통 등에 관한 요구 사항 규정

○ 壓榨공기공급소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석유화공총공사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2년 7월 1일 시행

○ 아세틸렌공급소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 기계전자공업부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2년 7월 1일 시행

○ 戶林防火機場工程 기술표준

중국 국가표준. 중국 경공업부 작성, 중국 임업부 비준, 1987년 10월 1일 시행

○ 煙花爆竹工廠 설계안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 경공업부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3년 5월 1일 시행

○ 建設防雷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 기계공업부 작성, 중국 국가 계획위원회 비준, 1984년 6월 1일 시행. TV 탑 및 폭발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피뢰침 설치에 대한 규정

○ 건축소화기배치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公安部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1년 8월 1일 시행

○ 할론1211소화계통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公安部 작성,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88년 5월 1일 시행

○ 할론1301소화계통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公安部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3년 5월 1일 시행

○ 저배수(저발포) 포말소화계통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公安部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2년 7월 1일 시행

○ 자동분수소화계통(스프링클러)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公安部 작성,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86년 7월 1일 시행

○ 화재자동경보계통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 경공업부 작성,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비준, 1988년 11월 1일 시행

○ 화재자동경보계통 시행 및 검수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 경공업부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3년 7월 1일 시행

○ 폭작 및 화재위험환경전력장치 설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公安部 작성, 중국 건설부 비준, 1992년 12월 1일 시행

○ 民用爆破器材工廠 설계안전규범

중국 국가표준. 중국 병기공업부 작성, 중국 국가 계획위원회 비준, 1986년 7월 1일 시행

○ 석유공업용 가열로 안전규정

중국 석유공업부표준, 석유공업부 대경석유감찰 설계연구원 작성, 석유공업부 비준 1988년 10월 1일 시행

다. 중국의 방화관련 표준의 특징

중국의 소방당국자에 의하면, 중국의 방화관련 표준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일본이나 미국 법령규칙보다도 구 소련의 규정을 참고한 경우가 많다.

- 선진국만큼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설비가 보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화구획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다.

- 중국의 방화관련 규정은 특히, 화재예방과 소화를 중시하여 작성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의 국영보험회사가 종래 오랫동안 국내의 보험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불은 국고에서의 거출에 의해 국가가 손실을 입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라. 방화관련 규제의 운영상의 특징과 실무상의 유의점

앞에 나온 「건축설계방화규범」은 농촌부를 제외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화에 관한 기준이다. 각 자치체에서는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칙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방관계자에 의하면, 방화규범에 관하여 세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자치체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운용실태로서 명문화에 이르지 않은 행정지도적인 것은 존재하는 듯하며 운용실태로서 대련시 개발구 규획건설국에 의하면, 대련의 경우, 개발구 중 보세구의 건축물에는 전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당국이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층건축물(높이 24m 초과)과 같이 방화규범이 개정 중의 것, 초고층건축물(높이 100m 초과)과 같이 방화규범이 없는 것 등에 대해서는 개별 소방당국과 절충하는 것이 된다.

대도시에서는 백화점, 호텔, 오피스빌딩, 맨션 등 대부분이 고층 또는 초고층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실제로는 개별교섭된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그 때에는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대개 문제없이 인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인·허가를 순조롭게 취득하는 데에는 사전에 담당부문과 상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고층, 초고층 이외에도 앞서 기록한 행정지도적인 부분이나 방화규범상 조문의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개개의 안전마다에 구체적으로 상담해 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주요 도시에는 소방OB를 중심으로 한 방화건설트적인 기관이 있고, 이들 기관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설계를 하면, 순조롭게 신청이 통

과된다. 덧붙여, 북경의 北京科學諮詢中心華安消防科學諮詢分部의 경우, 건설트료는 공사규모에도 의하나 공사비용의 2만분의 1~1만분의 1이다.

중국의 경우, 설계도 단계에서의 심사뿐만 아니라, 시공중에도 자주 소방서의 입회검사가 있는 외에 소방용기기의 샘플검사(중국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물론, 중국 정부의 인정품도)도 요구되는 등 공사의 여러 단계에서 검사가 있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건축공정의 관리상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공안부의 소방 연구소는 천진, 상해, 심양의 3개소에 있다. 각각의 기기는 어딘가의 소방연구소까지 보내져 검사받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린다).

한편, 중국의 일반기업의 안전 방재에 대한 의식은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최근 방문한 공장에서조차 합작 상대(대형 국영기업)가 건설한 공장건물에서는 공장 출입구의 철문의 부착상태가 나쁘고, 인력으로는 개폐되지 않는 등 외측에 걸쇠가 붙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내부에 가두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주재한 주재원에 의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전대책이나 설비의 유지관리 등에 사용한 비용은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경영자가 중국에는 아직 많고, 그 지방 자본의 기업은 방화 방쪽을 포함한 안전관리체제나 공해방지의 취결이 불충분한 기업도 많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 합작 상대의 공장건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상대방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안전관리면에서 문제가 없는가를 신중히 체크하여 필요시는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본 내용 중의 원문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 78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기가입제연설비의 누설량 산출공식의 유도는 필자의 사정에 의해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